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의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 17의 이행수단을 중심으로

현 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행수단의 강화와 글로벌파트너십의 재활성화’(17번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이전 개발의제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논문은 UN-SDGs 17번 목표가 K-SDGs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K-SDGs 목표 17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SDGs 17번 목표는 개도국의 구조적 역량강화를 제외한다면 개발재원과 개발파트너십이라는 양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K-SDGs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양한 지표와 목표를 포괄하고자 하는 K-SDGs는 17번 목표의 세부목표 중 개발재원 확대와 관련하여 GNI 대비 ODA 비율로 간명하게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는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공적개발원조 중심이며, 그 비율 또한 낮은 한국에게 있어 현실적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재원의 축소, ODA 현대화, TOSSD의 도입 등 개발재원 유형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한국에서도 민간재원 동원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와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 파트너십의 경우 국내 시민사회가 정부정책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개발도상국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 및 현지화 등 개발주체로서의 시민사회조직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초기단계인 개발재원의 다각화를 위한 민관협력파트너십의 개선을 위해 ODA의 책무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적개발원조 중심의 국제개발협력력을

*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감안할 때 수원국과의 국별 파트너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국제 개발협력의 전략적 구상에 있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ODA 전략 수립단계부터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대화를 강화할 뿐 아니라 다층적 수준의 수원국 개발주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공여국으로서의 장기적인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목표 17, 개발재원,
개발파트너십**

I. 서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기존의 사회개발을 넘어 포용적 경제개발, 지속가능발전, 평화와 안보 등을 축으로 하여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이에 대한 해결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SDGs 이행을 위해¹⁾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정책적 협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지원, 국내적으로는 SDGs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계획과 이행체계를 수립 중이다(박정호 외, 2017; 김태균 외, 2016). 현재 K-SDGs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변경계획(환경부·관계부처합동, 2018)이 수립된 상태이며, 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SDGs-17번 목표에 총괄하여 반영하려는 중이다.

17개의 목표를 제시한 UN-SDGs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행수단의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활성화”(17번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이전의 개발의제와 차별성을 지니는데 개발재원과 개발파트너십을 다루고 있는 목표 17은 그 자체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포괄하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개발재원과 개발파트너십에 관련된 다수의 연구나 보고서가 있으나 한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양한 지표들을 총괄하여 반영하고 있는 SDGs의 목표17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논문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²⁾. 또한 개발재원의 축소라는

- 1) 본고에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세부목표와 측정지표를 지칭하기 위해 UN이 당초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UN-SDGs라고 칭하며,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K-SDGs라 칭한다. 별다른 구분이 필요하지 않거나 양자를 포함할 때는 통상 SDGs로 칭한다. 또한 SDGs의 국문 번역은 지속가능발전목표로 통일하고 필요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혼용한다.
- 2) SDGs 전체 이행체계와 지표와 관련해서는 본 논문에서 인용된 박정호외(2017), 김석호외(2016) 등 다수의 연구역보고서가 있으며, 개발재원과 관련해서는 EDCF와 KOICA의 다수의 연구조사(EDCF 이슈페이퍼 위주), 논문으로 김태균·이일청(2014), 오수현(2016a), 오수현·이인호(2018), 정지원외(2018) 등이 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문경연외(2014) 등이 있다. 개발협력파트너십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례연구 및 다수의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프로젝트추진과정에서의 파트너십을 다룬 이일청·이진영(2018), 김태균외(2015), 손혁상·박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를 근본적인 배경으로 하는 UN-SDGs는 개발재원의 동원 자체가 새로운 글로벌파트너십을 요청하는 것으로 양자는 이행수단의 측면에서는 동시에 고찰되어야 한다. 한편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일종의 세계적 범위의 개발아젠다로서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는 달리 국·내외적 구분이 없는 개발목표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별도의 범주이지만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개발협력력을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단계에 있으나 그 구분과 연계는 모호한 상태이다. 단지 현재 한국은 UN-SDGs를 따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K-SDGs 17번 목표가 이를 총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9년 7월 현재까지의 각종 정부 정책문서, OECD 자료 등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수단에 있어 주요한 개발재원과 개발파트너십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에서의 17번 목표에 대한 지표 설정과 의미를 검토하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 SDGs의 이행수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K-SDGs의 수립과정과 목표17의 세부목표와 측정 지표를 미시적으로 살펴보고 목표 17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인 개발재원 및 개발주체(개발파트너십)의 세계적 현황과 한국에서의 이행현황에 주목한다.

II. K-SDGs 목표 17의 세부목표 및 지표

1. SDGs 목표 17의 세부목표 및 측정지표의 수립과정

UN-SDGs는 목표의 범위 뿐 아니라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UN은 이와 관련된 활동을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UN통계위원

총남(2017) 등이 그 예이다. 개발재원과 개발파트너십을 동시에 다룬 것은 오수현(2015) 등 소수가 있으나, K-SDGs 17번의 설정과 연관지는 연구는 거의 없다.

회에 권한을 위임하였고 UN통계위원회는 다시 SDGs 지표전문가그룹(IAEG-SDGs,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과 통계 역량강화, 조정, 파트너십을 위한 고위그룹(HLG-PCCB, High 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Building for Statistics fo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등 두 그룹을 창설하여 지표개발 및 관련 SDGs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UN, 2017a;2017b).

IAEG-SDGs는 2019년 2월 현재 2017년 UN 총회결의, 2018년 49차 UN 통계위, 50차 UN 통계위의 수정을 거쳐 전체 17개 목표에 걸쳐 232개의 측정지표를 마련하였다(UN, 2019). 이 중 UN-SDGs 목표 17은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의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전 개발의제와는 구별된다. 이는 SDGs에 소요되는 방대한 재원에 비해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한 이행수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목표 17은 크게 개발자원(finance), 기술, 역량개발, 무역, 시스템이슈로 구분되는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목표17의 세부목표와 Tier구분

개발자원		시스템이슈: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17.1	국내자원 동원력 강화 (개도국 징수역량 강화)	17.13	글로벌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17.2	선진국 원조약정 이행 (최빈국 지원 ODA/GNI 0.2% 장려)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일관성
17.3	개도국을 위한 다양한 출처의 추가 자원 동원	17.15	국가별 정책공간과 리더십 존중
17.4	개도국의 장기부채지속성 확보 지원	시스템이슈: 다수 이해자간 파트너십	
17.5	최빈국 투자촉진	17.16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기술	17.17	공공·민관·시민사회 파트너십
17.6	기술분야에서의 남·북·남·남 삼각협력 증진 등 지식공유 증대	시스템이슈: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17.7	개도국으로의 기술 개발·이전·보급·확산 촉진	17.18	개도국의 데이터 접근성 증대를 위한 개발역량 지원
17.8	최빈국과 적정기술 지원	17.19	개도국의 통계역량
역량개발		* 세부목표별 측정지표의 Tier 구분 (2019년 5월 현재) Tier 1: 17.1, 17.2, 17.3, 17.4, 17.6.2, 17.8, 17.9, 17.10, 17.11, 17.12, 17.18.3, 17.19. Tier 2: 17.13, 17.15, 17.16, 17.18.2 Tier 3: 17.5, 17.6.1, 17.7, 17.14, 17.17, 17.18.1	
17.9	개도국의 SDGs 이행역량 개발 지원		
무역			
17.10	다자무역체계 촉진		
17.11	개도국 수출증대		
17.12	최빈국의 시장진출		

출처: UN(2019); IAEG-SDGs(2019)를 재구성

IAEG-SDGs가 설정한 측정지표들은 데이터의 가용성 및 방법론 등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된다. Tier1은 개념이 명확하고 방법론 및 표준이 존재하며,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Tier2는 개념이 명확하고 방법론 및 표준이 존재하나 데이터 사용에 한계가 있는 경우, Tier3은 지표 측정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이다. 2019년 5월 현재 측정지표의 104개가 Tier1, Tier2는 88개, Tier3은 34개이다. 목표17과 관련해서는 <표 1>에서 보듯이 세부목표별로 총 25개의 측정지표가 존재하며 이 중 Tier1이 12개, Tier2가 4개, Tier 3이 5개이다(IAEG-SDGs, 2019).

한편 통계개발원(김석호외, 2016)에 따르면 목표 17의 25개의 측정지표 중 Tier1이 7개, Tier2가 3개, Tier3이 15개이다. UN-SDGs와 통계개발원의 작업은 작업시기의 차이로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대부분의 차이는 글로벌한 차원의 UN지표가 국내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이다. 다만 통계개발원의 작업은 통계데이터의 수집과 취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데이터 취합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취지에 맞게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간과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17.16 “지식, 기술, 자원 공유를 통하여 각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글로벌파트너십 강화”와 같은 항목의 UN측정지표는 “복합이해관계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진전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로서 자료의 수집은 국제기구 소관이나 해당국가로서 한국

의 글로벌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관련 지표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다³⁾. 17.12의 개도국에 부과하는 평균관세 또한 국제기구의 통계 수치를 통해 글로벌데이터 산출이 가능하나 한국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분류하고 있으나 정책적 차원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제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K-SDGs의 세부목표와 측정지표는 관련 통계거버넌스 구축(박영실외, 2017; 박영실·이영미, 2017)과 더불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목표의 조율과 구체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17번 목표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긴밀히 연관되는데 한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여타 지표의 ODA사업을 17번 목표에 총괄하여 반영하기 때문이다. 17번 목표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정부는 K-SDGs 작업반 활동에 기초하여 14개의 세부목표와 23개의 세부지표가 담긴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추진경과 및 세부목표지표 체계(안)」(이하 「체계안」)을 발표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체계안」은 UN-SDGs 17번 세부목표 중 기술분야, 무역분야의 3개 지표를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개별 정부차원에서 달성할 수 없는 글로벌거시경제 안정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목표를 포괄한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측정지표 또한 UN 측정지표를 대부분 수용하거나 보다 상세히 설정하였다. 「체계안」 발표이후 환경부와 관계부처 등은 2016년 채택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변경계획안인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이하 K-SDGs)을 2018년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K-SDGs는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2030비전을 재구성하고 세부목표와 측정지표 등을 재설정하였다(환경부·관계부처합동, 2018). 그러나 기존의 3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6)의 내용은 유지하면서 전체 비전과 평가지표만을 변경하였기에 제3차 기본계획과 변경계획은 상호정합성은 떨어지는 편이다⁴⁾. 목표 17과 관련하여 K-SDGs

3) K-SDGs 개선과정에 항목으로 추후 반영됨.

4) K-SDGs는 2016년 1월에 작성한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그대로 둔 채 세부목표와 지표의 변경을 추가하였다(6월 환경부 전화인터뷰). 따라서 기존의 기본계획과 변경계획

는 2018년 작업반에서 제안한 것을 보다 간명히 하였는데 세부목표와 지표는 <표 2>와 같다.

〈표 2〉 목표 17 지구촌 협력 강화

번호	세부목표 7	지표 9(UN 대비 신규 9)	2030 목표치	소관부처
17-1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	GNI 대비 ODA 비율	0.14('17) → 0.30	외교부, 기재부, 국조실
17-2	다자무역체제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를 지원한다.	개도국과의 교역비중	목표치 설정 필요	기재부 지속위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목표치 설정 필요	
17-3	개도국의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를 지원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 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외교부, 기재부, 과기부, 지속위
17-4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 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외교부 기재부
17-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을 강화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 조정 건수(국내 및 국외사항 포함)	목표치 설정 필요	지속위
		K-SDGs 수립 및 이행평가 결과	목표치 설정 필요	
17-6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는 유관기관 간 논의 통해 지표확정		지속위, 국토부, 해수부, 농진청 외교부
17-7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SDGs 이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참여단 및 장려회의 건수	목표치 설정 필요	지속위 국조실 외교부

(K-SDGs)의 세부목표와는 괴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3차 기본계획의 글로벌 책임국가에 해당하는 목표인 동북아 환경협력이나 기후변화 대처 등이 변경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박정호 외(2017)에 따르면 당초 2016년 1월에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3차 기본계획은 시기상 2015년에 채택된 SDGs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출처: 환경부·관계부처합동(2018)

「체계(안)」이 제시한 항목과 비교하여 K-SDGs에서 축소·변경된 세부목표와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선 개발도상국의 재원동원 역량강화, 개도국 데이터접근성 및 통계역량강화 등이 17.6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과 국제사회 지원 강화 항목으로 통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증진체제는 삭제되었으나 투자증진체제는 17.2 개도국 교역 및 투자증대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고채무빈곤국의 채무부담 완화의 경우 17.1 개도국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대 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측정지표는 17-1의 GNI대비 ODA 비율을 제외하고는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한편 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유상원조 중심의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 대외협력기금), 무상원조 중심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목표17의 소관부처는 이러한 제도적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UN-SDGs의 세부목표수와 지표 현황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현재 K-SDGs는 UN-SDGs를 간명하게 재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를 확정하지 못한 3개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유관기관간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제개발협력체계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함을 일정 정도 반영한다.

〈표 3〉 UN-SDGs와 K-SDGs 비교

		UN-SDGs	K-SDGs	비고
세부목표 수		19개	7개	
분야별 세부목표수	개발재원	5개	1개	K-SDGs는 UN-SDGs의 개발재원 중 공여국 약정 비율만을 지표로 선택
	기술 및 역량개발	4개	2개	UN-SDGs를 포괄적으로 적용
	무역	3개	1개	UN-SDGs를 포괄적으로 적용
	정책제도일관성	3개	2개	이 세항목은 시스템이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글로벌파트너십과 현재 개선이 필요한 정책일관성 부분만
	글로벌파트너십	2개	2개	

	데이터역량	2개	0개	을 지표로 선택
세부목표별 측정지표 확정		10개	6개	UN-SDGs의 경우 세부목표 중 측정 지표가 Tier 1로 구분된 경우를 확정으 로 파악 K-SDGs의 경우 지표와 목표치가 설 정된 경우는 1개로 개발자원(GNI 대 비 ODA비율) 하나임.

2. K-SDGs 17번 세부목표와 특징

K-SDGs에 따르면 한국은 목표 1-16까지의 SDGs를諸사회분야에 걸친 국제규범의 요구로 파악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정책과 병행하려 한다. 한편 MDGs의 연장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은 SDGs의 각 분야를 반영하겠지만 K-SDGs에서는 목표17에서 이를 포괄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우선 세부목표 17-5을 살펴보면,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의 이행수단 또는 포괄적인 지원영역을 제시한 여타 항목과 달리 17-5는 국내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대내·외)거버넌스기제와 관련된다. 이 부분의 측정지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조정건수와 K-SDGs수립 및 이행평가 결과로 단순화되어 있어 지표상으로는 현재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적 조정을 시행하고, 수립된 K-SDGs를 통계적으로 취합·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의 복잡한 체계, 분절화, 기술적 전문성 상실이라는 OECD 동료검토의 지적(OECD, 2018a)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법체계의 이원성(박정호외, 2017)등에 대한 지적해서 보듯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전략을 구성함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K-SDGs 이행체계와 관련하여 박정호외(2017)는 SDGs의 국내이행 실태 분석을 이행환경, 이행기획, 이행집행, 이행성과 점검 및 환류 등 단계별로 검토한 바 있다(표 3).

〈표 4〉 SDGs 국내이행 실태

요소	세부항목	문제점
이행 환경	리더십	- 고위급 리더십의지지, 참여기관간의 인식공유 결여
	법제도 기반 적정성	- 이원화된 법체계(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이행 기획	이행추진체계	- 환경부중심의 이행체계가 총괄기구로서의 역할, 권한, 조정 기능에서 구조적 한계
	이행계획 수립 적정성	- 지속가능발전 계획과 SDGs와의 연계성 결여 및 우선순위 설정의 혼란, 공동이행계획과 협력적 정책집행의 어려움
	이행목표의 명확성	- 전략적 선택과 집중 미진 - MDGs 후속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 강조 vs 諸사회분야를 아우르는 국제규범
이행 집행	기관사업 및 정책 정합성	- 범부처적 속성이 강해 단일부처의 노력만으로 달성 어려움
	이행 조직 적정성	사업에 따라 세부목표를 분절적으로 관리
	이행인력 및 예산 적정성	- 기관별 전담 인력 부족
	내·외부 협력 적절성	- 협력 플랫폼 부족
이행 성과 점검	성과점검 체계의 적절성	- 통계청을 중심으로 SDGs 관리 - 성검점검 결과의 환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 미흡 -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의 거버넌스 도입 필요

출처: 박정호외(2017) 요약 재정리

이 중 특히 법제도 기반의 적정성과 이행추진체계는 서둘러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지목된다. 우선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인해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하위법으로 개편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전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은 대통령 소속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보다 위상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범부처적 추진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중심의 SDGs 이행체계는 총괄기구로서의 역할, 권한, 조정 기능 등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개

념적으로도 ‘환경’과 ‘성장’만을 중점으로 둔 녹색성장이 보다 상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위에 두고 있어 관련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정호 외, 2017). 따라서 세부목표 17.5의 경우 측정지표에 대한 목표치 설정뿐 아니라 법체계와 이행추진체계의 개선을 통한 정책일관성과 거버넌스 기제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SDGs의 국내적 이행뿐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이행전략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일부 개정되어 최근 시행((2019.06.25)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를 명시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 UN SDGs의 이행 필요성을 반영하였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법제적 반영뿐 아니라 SDGs의 이행체계와 국제개발협력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이행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⁵⁾. 한편 현재 국제개발협력에서의 SDGs연계는 부처별로 진행하는 다양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년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계획 또는 평가 단계⁶⁾에서 UN-SDGs와의 관련성을 반영함으로써 사후적으로 SDGs 목표를 측정할 가능성이 크다.

17-5와 아울러 17-7의 민간파트너십 또한 SDGs와 국제개발협력의 연계에 있어 국내 이행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세부목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안]」(이하 「파트너십기본정책」)을 의결하고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목적 및 목표, 원칙, 이행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9). 파트너십은 개발도상국의 시민사회와의 연계도 고려한 대외적 과제이

5) 한편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하여 「2020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기준)」(국개위, 2019b)에 따르면 국개위의 조정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한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6) 예를 들어 외교부개발협력국이 배포한 「2019년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외교부, 2018)에 따르면 ODA사업별로 SDGs와의 연계성을 적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국개위, 2019c)의 경우 SDGs와의 연계를 찾기 어렵다

기도 하다.

17-3 개도국에 대한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강화의 경우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수원국 실정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다수의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권율, 2018). 17.3은 17.4의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역량지원과 더불어 K-SDGs에서 명시되지 않은 UN-SDGs 중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SDGs의 이행과 평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통계역량 구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17.2는 무역 또는 글로벌거시경제안정성과 관련된 이슈이나 그 효과를 볼 때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의 자원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 포함된다.

상기의 세부목표를 제외하고 남은 17.1과 17.6은 UN이 SDGs를 채택하고 목표 17을 제시하였을 때 가장 염두에 둔 이행수단의 핵심적 과제인 개발재원과 개발파트너십과 관련된다. 17.1의 경우 다양한 개발재원의 세부목표를 통합한 것이며 측정지표는 UN-SDGs의 측정지표인 GNI 대비 ODA 비율로 단순화하였지만 실제로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부족한 개발재원의 공급과 재원의 다각화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한국의 경우 2030년 목표치는 0.3%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국개위, 2015)에 부합한다. 그러나 OECD 동료검토(2018a)에서도 지적되듯이 이전 승인 목표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글로벌목표인 0.7%에는 미달하는 수치이다.

17.6의 글로벌파트너십 또한 개발재원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개발협력의 주체(현민, 2017)를 포괄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개발재원의 다각화와 글로벌파트너십의 강화는 상호 연계된 것이며 목표 17이 이행수단에 대한 요청이기에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다양한 방식이 요청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체계의 분절성을 논외로 치다면 개발재원은 유상원조 중심의 기재부가, 글로벌파트너십은 무상원조 중심의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아래에서는 SDGs의 17번 이행수단과 K-SDGs 및 한국국제개발협력과의 관련성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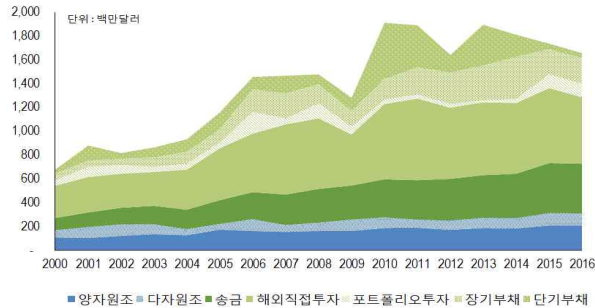
재원과 개발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I. 개발자원 지형의 변화와 ODA현대화

1. SDGs 개발자원 수요와 민간재원의 동원

SDGs가 기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통적 남-북 접근을 탈피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약 3.9조 달러(UNCTAD, 2014)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냐는 지속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OECD(2018b)는 개발재원의 최근추세를 분석하며 자원 확대 공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가 민·관 모든 개발주체가 협력하고 재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UN, 201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외부재원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ODA의 추세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이주노동자 증가에 따른 송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대규모 대외자원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OECD, 2018b). 2013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3-2016년 사이 외부재원은 12% 감소하였으며 2016-2017년 해외직접투자는 30%이상 감소하였다(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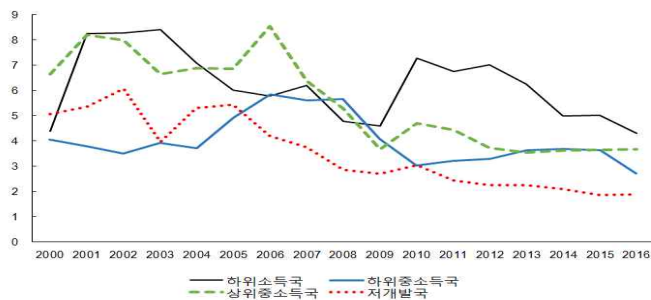
〈그림 1〉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자원 추이



출처: OECD(2018b: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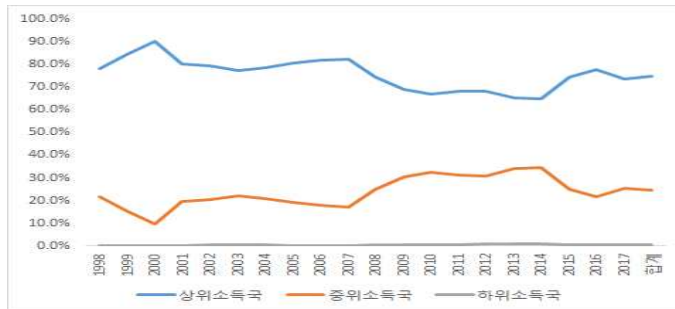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의 GDP 성장률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또한 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채무 또한 164조 달러를 기록하여 역사적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개도국의 재정수지 및 채무불이행 위험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OECD(2018b)는 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 또는 불안정을 배경으로 투자리스크 및 높은 거래비용(정지원 외, 2018) 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GDP 대비 민간투자는 감소하고 있다(그림 2 참고).

〈그림 2〉 개발도상국으로의 민간투자흐름(GDP대비 비율)



출처: OECD(2018b:32)

〈그림 3〉 FDI 국가별(소득그룹) 비율



출처: World Bank Data, 저자 재구성

2013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그림 3>에 서 보듯이 민간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고소득 국가에 대한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의 비율은 2013년부터 증가하고 있어 개발 자원 지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⁷⁾.

개발도상국으로의 개발자원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OECD(2018b) 에 따르면 SDGs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약 2.5조달러의 (대외)개발재원이 추 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4 참고). 이 과정에서 민간자원 동 원, 보다 정확히는 민간자원 유입확대를 위한 공적재원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⁸⁾. 여기에서 민간재원은 민간분야로부터 동원된 재원을 말하 며 OECD(2016a)는 민간부분을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기업)를 의미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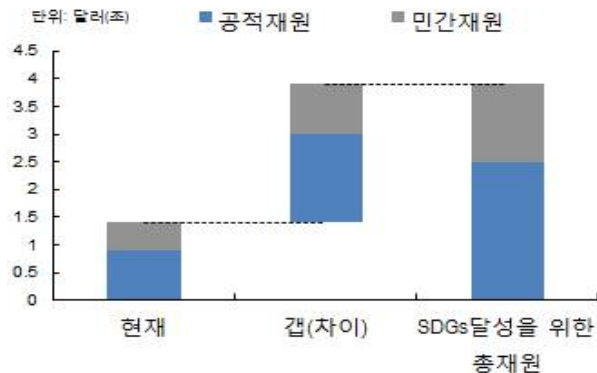
7)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 증대 요청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경제의 상황은 보 다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해 이는 자본도피(안 전자산 선호)시대에 개발재원의 증대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8) 물론 민간재원의 동원 이외에도 SDGs이행을 위해 글로벌한 차원의 혁신적 개발재원의 조 성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제화된 활동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세금 또는 부담금(금융거래 세, 탄소세, 항공세), 자발적 연대기금, 전기이행 및 채무기반수단(단기자본 대응을 위한 공 적 자금 투입, 예: 국제백신금융기금, 녹색채권), 시장기반 메커니즘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 시행되고 있다(오수현, 2016a). 단 시장기반 메커니즘 즉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은 ODA현대화 및 TOSSD 논의에 흡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의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의 논의 과정에서는 민간재원(private finance)의 정의를 ‘민간분야로부터 동원된’에서 ‘상업적 출처(commerical sources)로부터 동원된’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공여국의 국영기업 또는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상업적(영리) 목적임에도 ‘공공분야’로 배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비상업적 목적’의 NGO나 자선단체를 배제할 가능성은 높다(정지원 외, 2018: 42; 오수현·이인호, 2018).

현재 민간재원의 동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개발재원의 확대는 용이치 않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차치하고라도 개도국 자본시장의 비효율성, 현지 정보에 대한 부족 등은 개도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된다. 또한 민간재원의 동원은 단순한 재원의 유입뿐 아니라 사회·환경·경제적 관점에서 개발효과를 지향해야 하는데(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2015), 민간재원은 개발효과보다는 재무적 수익에 따른 리스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는 투자위험이 높은 개도국으로 유입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림 4〉 SDGs 이행을 위한 자원(정부 세입제외)



출처: OECD(2018b:212)

이러한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를 배경으로 OECD는 공적개발재원의 확대와 민간재원의 동원을 위하여 OECD는 ODA 개념의 현대화와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2. ODA 현대화와 K-SDGs 개발재원 관련지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공적개발원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재원과 관련한 논의를 ODA 현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ODA현대화는 ODA재정의와 측정방식으로서의 TOSSD 도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2018년 현재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정의 등이 확정되어 OECD 통계지침에 반영됨에 따라 ODA 재정의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표 4, 그림 5 참고). 다만 민간부문에 지원하는 차관이나 증여가 아닌 지원수단(예: equity)에도 양허적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가 협의 중이다. 또한 OECD DAC는 금융수단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로서 증여, 채무구제수단, 메자닌 금융, 지분투자 및 집합투자기구, 보증 및 기타 발생하지 않은 우발채무로 구분 짓고,⁹⁾ 평화와 안보 관련 지출 보고 기준을 변경하여 공여국내 난민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OECD DAC WP-STAT, 2018; 한국수출입은행 경제협력개발부 정책연구팀, 2016; 정지원 외 2018:40). 이 중 확정된 새로운 금융수단들, 즉 증여, 대출, 지분투자, 보증 등은 민간재원과 다양한 형태로 결합된 혼합금융에 활용되어 민간부문의 재원을 동원하는 금융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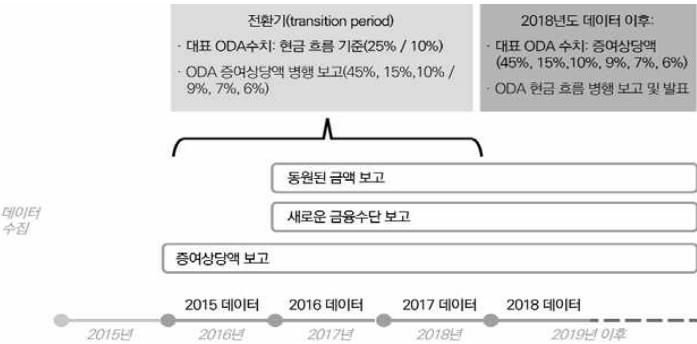
9) 이와 관련하여 OECD는 2012-2016년에 걸쳐 보증, 신디케이트론, 집합투자펀드, 기업지접투자, 크레디트라인 등 5개 금융수단에 대해 조사를 한 바 있으며 현재 그 범위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외 여타 수단 등으로 확대하고자 한다(Benn et al, 2017).

〈표 5〉 OECD DAC의 ODA 재정의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14년 DAC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
ODA 적격 기준	공여주체	공공주체가 제공	동일
	공여목적	수원국 경제발전, 복지 증진	동일
	공여조건	증여율 25% 이상 (모든 국가에 대해 10% 할인을 적용)	3. 소득그룹별 최소증여율 이상 ① LDCs/LICs: 45%(9%할인율 적용) ② LIMCs: 15%(7%할인율 적용) ③ UMICs: 10%(6%할인율 적용)
ODA 측정방식		순지출방식 (총지출액-총상환액)	증여등가액방식 (총지출액x증여율)

출처: 임소진(2015:2) 수정

〈그림 5〉 ODA 증여상당액 방식의 통계 지침 적용
일정



출처: 정지원외(2018: 39)

ODA 재정의와 더불어 OECD DAC는 유엔통계위원회와 함께 개발재원의 흐름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TOSSD에 대한 논의를 지속 중이다. TOSSD는 특히 SDGs 17번 글로벌파트너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TOSSD는 정의상 국가간 ODA뿐 기타공적자금(OOF), 개발 촉진 및 글로벌 도전과제 지원 목적의 모든 공적 개발재원을 포함한다

(정지원 외 2018).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방대한만큼 이를 측정하는 TOSSD 또한 거의 모든 재원의 데이터를 추적하겠다는 방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OECD DAC(2019)에 따르면 2019년 1월 현재 TOSSD의 I축에 대한 방법론은 완료한 상태이며 II축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국 중심의 모든 공적지원재원¹⁰⁾을 포괄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재원 규모를 전체를 측정하고자 하는 TOSSD는 양허적·비양허적 기준을 크게 고려하지 않지만 ODA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DAC 회원국의 국제 개발 커뮤니티에 대한 책무성의 지표로서 ODA가 그 역할을 할 것임을 OECD는 명시하고 있다(OECD, 2016b). 이로 인해 TOSSD는 ODA와 달리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TOSSD도입에 따라 기존의 ODA통계가 재원 투입규모를 파악하는데 치중하였다면 TOSSD는 성과에 대한 증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프로젝트 단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금융협력 즉 다양한 재원 출처와 금융수단들을 공적재원과 이를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의 형태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지원 외, 2018:29-38).

10) 한편 OECD는 수원국입장에서 TOSSD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필리핀, 세네갈, 나이지리아, 코스타리카의 개발재원을 TOSSD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중이다. 선진국 1개 사례를 더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OECD Working paper 42, 43, 50, 56).

〈표 6〉 TOSSD 기본 프레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자원(TOSSD)	
I 축 : 국가	II 축 : 글로벌&지역 차원
확대된 수원국으로의 국가간 자원 흐름 (* 비양허성 차관/양허성 증여 및 차관/민 관협력사업, 민간자원동원/민간부문 수단/ 인도적 지원 등)	국제 공공재,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및 글로벌 도전과제(*평화와 안보, 환경적 지속가능성, 국제규범, 인권보호, 안전한 국제이민, 전염병 퇴치)에 대한 지원
개발주체 : 모든 공식적 주체	개발자원 수단 : 모든 수단
공식적 양자·다자기관 전통적 공여자 및 신흥 경제(남-남, 3자 협 력 포함)	모든 금융수단(증여, 대출, 보증, 기타 양 허성 및 비양허성 모두 포함) 기술협력과 같은 모든 형태

출처: OECD DAC(2019)

글로벌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ODA 현대화작업은 한국의 이행수단, 특히 개발재원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현재 K-SDGs의 목표17에 개발재원과 관련된 직접적 사항은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한다”이며 그 지표는 GNI 대비 ODA 비율 1개로 국한되어 있다. 개도국의 징수역량강화, 다양한 출처의 추가재원 동원, 개도국 장기부채지속성 확보 지원, 최빈국 투자 촉진 등 UN-SDGs가 제시한 개발재원 관련 목표가 위의 세부목표로 포괄되고 있으나 평가지표 측면에서는 GNI 대비 ODA 비율로만 정해두고 있어 목표 17 이행수단의 개발재원 측면을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물론 국제공약이 GNI 대비 ODA 비율이 0.7%이며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역사가 매우 짧으며 2018년 달성치가 0.15%임을 감안(표 6 참고)할 때 이러한 지표 설정은 매우 현실적인 목표로서 국제사회의 요청에 준하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해나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19년부터(2018년 ODA 데이터) 적용될 증여등가액 방식의 ODA보고 방식과 관련하여 한국은 2018년부터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증

여등가액 방식이 한국ODA 측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개발금융의 ODA활용방안」(국개위, 2016)에 따르면 한국 유상(EDCF) 원조 인정액이 약 5-7%(연 약 1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표 7〉 한국의 개발자원 목표치와 달성치(ODA/GNI)

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30
목표치	0.15	0.16	0.17	0.18	0.20	0.30
달성치	0.16	0.14	0.15(증여등가액방식)	-	-	-

출처: 국개위, 2019b

GNI 대비 ODA 비율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로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목표가 되겠지만 개발자원 확대라는 SDGs의 기본 정신을 반영하고 향후 TOSSD 등을 고려한다면 재원추정 범위를 확대하고 혼합금융(또는 개발 금융기관의 실질적 역량강화)의 개발도 필요하다¹¹⁾. 한국의 경우 EDCF를 활용한 혼합금융의 사례로서 2014년 베트남 틸롱 교량사업, 2015년 베트남 락안-년작 도로사업 등에 양허성 차관이 활용된 바 있으며 솔로몬군도의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에는 협조융자 방식으로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사업에 양허성 재원을 공급한 바 있다.

민간부문의 역할과 민간재원 동원에 있어 공적재원의 역할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방식의 상업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OECD가 혼합금융의 5개 원칙, 개발목적성, 민간재원 동원, 현지개발환경에 대한 고려, 효과적인 파트너십, 모니터링 등을 제시한 것에서도 보듯이 민간재원의 상업성과 공적재원의 책무성 및 공공성의 균형은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며(김잔디, 2017). 민간재원의 확대가 단순한 개발금융상품의 개발이 되지

11) SDGs 자원조달 방안으로서의 민간금융수단, 혼합금융에 대해서는 주로 EDCF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금융기관으로서의 수출입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EDCF이슈페이퍼 Vol4의 No4, No5, No7, Vol6의 No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KOICA를 중심으로 한 민간재원의 동원에 대해서는 파트너십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국제개발협력의 목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ODA 중심성’을 강조한 김태균·이일청(2014)의 논의는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김태균·이일청(2014)은 우선 민간재원 동원에서 발생하는 시장성과 개발협력 공공성의 침해와 관련된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고, 새로운 개발재원이 ODA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임을 분명히 한다. 둘째 무상과 유상의 차별성을 기초로 ODA의 중심성이 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¹²⁾. 셋째 공적개발원조의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특화된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제도화하고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절화 현상이 개발재원에서도 재생산되는 경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V. 이해관계자의 증대와 글로벌파트너십

1. 새로운 개발주체의 등장과 한국의 개발협력파트너십

SDGs에서 강조하는 글로벌파트너십은 사실 국제개발협력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제개발협력은 일방적인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원조였던 시기부터 상대방이 있는 지구촌 협력의 일환이기 때문이며 개발재원의 다각화는 필연적으로 다차원적인 파트너십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세계화 이후 ‘범세계적 문제’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영역의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새로운 개발주체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월드비전인터내셔널, 세이브더칠드런, 케어, 옥스팜과 같은 국제적 NGO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수원국의 정치적 자유화의 결과 수많은 비정부기구(NGOs)가 출현하였다. 또한 자산규모 440억달러에 이르는 빌&멜린다

12) 실제로 OECD의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통해 동원된 민간 재원 중 상위중 소득국에 43%가 집중되고 최빈국은 7%에 그쳐 최빈국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Benn and Hos, 2017)

게이츠 재단과 같은 대규모 자선단체¹³⁾도 등장하였다. 둘째 개발재원의 공급과 개발협력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민간기업 특히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초민족적 기업이 주요한 개발주체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수익활동을 넘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셋째 ‘범세계적’ 문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제기구와 특별 펀드들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기구와 펀딩들은 다자적 협력틀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지역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개별지방 정부와 함께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공여국 이외의 ‘국가’기반의 새로운 공여국과 남-남 협력을 선도하는 국가(특히 중국)들이 등장하고 있다(현민, 2017). 따라서 기존의 국제기구뿐 아니라 다양한 재원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다.

UN-SDGs는 글로벌파트너십의 문제를 다중이해자간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 전문가, 기술, 금융적 자원 등과 관련된 모든 파트너십을 권장한다. 측정지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중 이해자 개발효용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진전을 보고하는 국가의 수’로 정하고 있다(Tier 2로 분류). 또한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을 두 번째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측정지표를 민간파트너십과 시민사회 파트너에게 지원된 금액으로 측정하고자 한다(Tier 3으로 분류)(IAEG-SDG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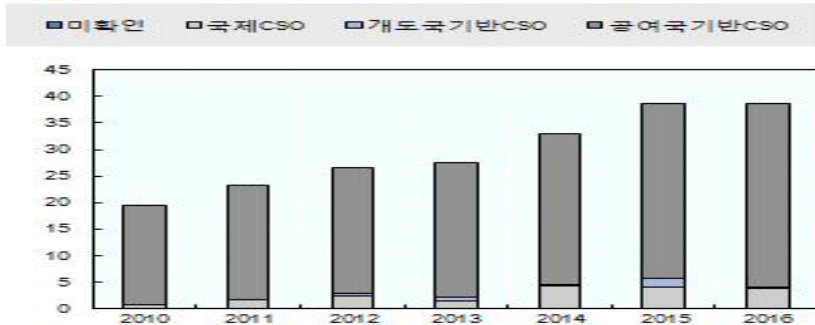
K-SDGs에서는 이를 글로벌파트너십과 국내의 파트너십을 구분하여 세부목표와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글로벌파트너십의 측정지표는 미확정인 상태이며, 국내파트너십은 민관협의체 참여기관 수 및 정책회의 건수로 제시하고 있다. UN-SDGs의 글로벌파트너십 측정지표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개발사업의 효과성과 평가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라는 요청에 가깝기

13) 자선단체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중 20개 정도가 전체 증여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3/4정도가 미국에 기반한다. 개도국으로 향하는 금액은 2013-2015년 사이 년가 79.6억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 중 40%를 차지하였다. 특히 보건·의료·농업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OECD, 2018b:116-117).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공적개발원조에서의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해보이지만 현재 지표는 미확정이다(환경부·관계부처합동, 2018).

한국의 글로벌파트너십과 관련하여 OECD동료검토(OECD, 2018a)는 다자협력 추진전략을 통해 국제적 다자기구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실용적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흥공여국과 OECD 회원국간의 삼각협력에 대해 그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파트너십과 관련된 민간부문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개발목적, 파트너십, 원칙 및 재원 지원 기준 등 정책 체계 전반을 지적하였다. 공적개발원조에서 시민사회 관련 지원의 경우 2016년 OECD DAC 국가들이 전체 ODA의 15%인 19,768백만을 집행한데 비해 한국은 2.4%만이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를 통하거나 지원되었다(OECD, 2018c). 이 중에서 글로벌파트너십과 관련된 개발도상국 CSO와의 협력은 극히 드물다(그림 6 참고).

〈그림 6〉 한국 양자원조 중 CSO를 통한 지원(단위: 백만달러)



출처 : OECD(2018d).

그간 한국 정부는 CSO를 독자적 개발협력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지원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OECD의 동료검토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2019년 제32차 국개위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본 문서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정

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주체가 수원국임을 반영하였다(국개위, 2019a). 국내파트너십의 측정지표로서의 정례회의 건수 등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는 파트너십 기본정책의 이행을 위한 효과적 전략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를 명시하였다(국개위, 2019b).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CSO가 정부정책의 파트너로 인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 공동재원조성프로그램(손혁상·한재광, 2014)에서 보듯이 보다 효율적인 개발재원의 동원 체계와 개발주체 참여 체계를 형성하는 방안 등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CSO등과의 파트너십과 현지화 등을 통해 다양한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수준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부터 정책수준에 이르는 협력을 위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시민사회의 비판과 개발금융기관이나 정부에 의한 포섭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대항적 공존’(김태균, 2018)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파트너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리는 역시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이 아닐 수 없다. UN-SDGs 「각국의 정책 재량과 리더십 존중」과 17.4의 「개발도상에서의 SDGs 이행계획 지원」에서도 나타나듯이 SDGs는 기본적으로 수원국의 입장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가 강하며, 이는 국제개발협력의 본래적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K-SDGs의 추진에 있어 한국의 독자적 영역 구축이 중요함과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수원국별 SDGs이행계획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국가별 협력전략이 보다 중요하다¹⁴⁾. 한국은 현재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적개발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료검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국가협력전략은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하며, 사업선정에 있어 향후 지속가능성과 수원국의 성장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협력국가의 SDGs 수립과정에서의 정책협의 강화, 수원국의 실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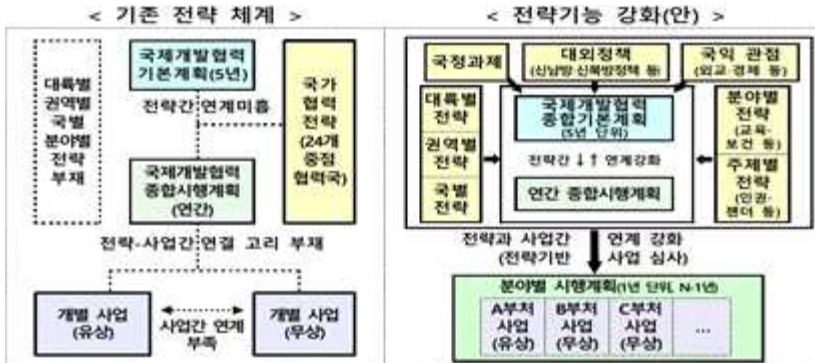
14)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국개위, 2019d)부터 기존에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던 국별 ODA 예산계획을 별도로 구분하는 등 국별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적 SDGs 목표에 대한 수요파악과 이를 다시 국가별 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UNDP의 개발재원평가 및 OECD의 다면적 국가리뷰 활용, 정책 대화를 통해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파악하고 한국은 공여국으로서의 우선순위와 해당국가의 개발우선순위 사이의 교집합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위주의 한국의 ODA사업을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성장단계에 맞는 장기적인 국별 전략 사업들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지방차원, 도시 차원의 개발전략의 진단과 지원을 위한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뿐 아니라 수준별 당사자간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 형성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관련되는데 「2020년 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안)」은(그림 7 참고) 이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략수립의 변수가 많은 편이며 국정과제 또는 대외정책이라는 변수¹⁵⁾보다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따른 장기적 계획수립이 보다 요청된다. 아마도 이상적 시나리오는 국별전략(수원국별 SDGs전략 파악)->국가별 우선분야 선정->분야별 재원 및 사업 전략 수립 -> 최적합부처 선정 혹은 파트너십 방식 구축 등으로 간소화된 과정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Top-Down 방식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반적 정책 수립과정에는 국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Bottom-Up 방식과 OECD동료검토에서 지적된 현지정책 대화의 심화와 현지에서의 Bottom-Up 방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5) 국정과제 및 대외정책과 달리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있어 국익(국익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지만)의 반영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한국은 국익을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규정하는데 보다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OECD DAC 평가네트워크 회의에서는 ‘이타주의에서 국익으로’라는 제목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호주, 뉴질랜드, 일본 및 네덜란드의 개발협력정책과 국익과의 관계가 논의되기도 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경험지원실 경험평가팀, 2017).

〈그림 7〉 국제개발협력 전략연계안



출처: 국개위(2019b)

2. 개발재원과 한국의 민관협력파트너십

글로벌파트너십의 재확성화는 글로벌거버넌스의 구축과도 관련되지만 민간부문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개발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리고 민간재원의 동원은 개발목적에 공감하는 민-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개발주체간의 파트너십은 현재 무상원조를 관할하는 KOICA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히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KOICA에서 시행하는 혁신적개발협력사업, 시민사회협력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KOICA 홈페이지). 이 중 민간재원 동원으로 분류 가능한 것은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DIP)중 파트너별 재원분담비율을 정하고 있는 포용적 비즈니스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Program, IBS)이다¹⁶⁾. 그 외 혁신적 기술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Program, CTS)의 경우 초기자금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nnovative Partnership

16) 시민사회협력사업의 경우 정부, 시민사회, 대학 등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며 KOICA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참여기관이 비영리법인이 대부분이어서 OECD DAC의 기준에서 민간재원의 동원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Solution Program) 의 경우 SDGs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보유한 빌&멜린다 재단이나 EAA 재단(Educational Above all Foundation) 등 선도적 해외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오수현·이인호, 2018).

PPP사업내 기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IBS는 KOICA와 기업이 ODA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IBS 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을 비즈니스 가치사슬안으로 포함하거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이후 공동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시행한다. KOICA(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4개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총 924억원(KOICA 482억, 기업 442억)의 개발재원으로 총 110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동료검토의 지적이나 EDCF, KOICA의 각종 보고서에서 보듯이 IBS를 포함하여 민간부문을 참여시키는 각종 파트너십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서는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다양한 파트너십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민관파트너십은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분야가 투명성과 책무성과 같은 개발협력의 기본적 원칙들을 우회할 가능성이 크며 민간투자에 대한 측정 및 평가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투자의 증대가 개도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도 있다(박예린·박인혜, 2015). OECD DAC 선진국들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혼합금융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상황이지만 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관련제도와 정책이 정착될 때까지는 책무성을 우선으로 한 유엔개발계획형태(김태균외, 2015)를 따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에 있어 민간부문은 수익성 특히 최소손실자본에 대한 요구를 민관협력 참여의 주요한 동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증, 지분투자, 개발성과연계채권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재원 수단의 개발과 제도화 또한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민관협력과 관련하여 일본 JICA에서 활발히 사용하는 인프라 타당성 조사 지원¹⁷⁾ 및 기술지원(오수현 2018:23) 등을 공적개발원조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을 이후 사업시행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¹⁸⁾.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유상·무상 원조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체계의 재편성,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와 기술지원을 위한 (현지)전문인력 양성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마도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가장 이상적 형태는 공신력있는 공여기관의 책임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조사와 이에 적합한 금융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가장 적합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추진과 완료 이후까지 공여기관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V. 결론

UN-SDGs의 17번 목표는 개발재원, 기술, 역량개발, 무역, 시스템이슈 4개 분야에 걸쳐 1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K-SDGs는 이를 7개의 세부목표와 9개의 지표로 재구성하였다. SDGs의 목표가 1-17까지 상호연계되는 부분이 많으며 17번 목표도 세부목표내에서 서로 연관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17번 목표에서 17-1 “개도국의 SDGs 이행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대”를 중심으로 한 개발재원 관련 목표와 17-6과 7의 파트너십 관련 목표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발재원의 측면에서 SDGs의 가장 핵심적 이슈는 민간재원의 동원을 통한 개발재원의 확대이다. 17번 개발재원과 글로벌파트너십은 이를 위해 마련된 목표에 다름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OECD는 ODA의 현대화, TOSSD 개념의 도입, 혁신적 금융수단의 마련 등 측정과 수단마련을 위해

17) 「2020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안)」에는 사업간 연계와 중복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유무상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역량강화와 운영지원 등에 무상원조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의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에서의 타당성 조사, 케냐의 교통체계 건설과 관련된 정책자문 등이 사업계획단계에서의 무상원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는 민간파트너십을 위한 것은 아니다.

18) 현재 IBS는 민간부문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KOICA에 제안하고 타당성 검토 후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다각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 K-SDGs는 개발재원 확대를 단지 GNI 대비 ODA 비율에 국한하고 있지만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수단의 개발과 책무성의 확보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발재원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다차원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을 요청한다. 새로운 시민사회단체, 기업, 남-남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여국 등 새로운 개발주체가 등장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시민사회, 기업등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관협력의 핵심인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파트너십의 수단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현지화 전략이 부족한 가운데 수원국의 다양한 층위의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미흡하다. 그러나 SDGs가 개별국가의 발전목표를 중요시한다고 할 때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략 수립에 있어 국별 전략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공여국 입장에서 전략 뿐 아니라 수원국의 개발전략 형성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이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수원국의 다양한 층위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개발재원과 개발파트너십을 위한 전략 형성에 앞서 법적·제도적으로 취약한 국내 SDGs이행체계와 이와 관련된 국제개발협력 체계의 개선 즉 17-5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기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취하기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어떤 사업도 SDGs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SDGs 이행에 있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지표달성이 아니라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K-SDGs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발재원으로서의 해외송금과 관련된 지표들(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 등은 달성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달성가능한 지표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해외송금을 하는 이주민의 지위향상(K-SDGs에서는 10번목표에 포함)을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이주민에게 포용적인 국가제도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과제이다. 또한 개발재원의 확대는 결국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를 통한 무역 및 투

자의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단기적 사업 수행이 아니라 수원국이 글로벌가치사슬에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장기적인 상호성장의 전략하에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의 SDGs연계는 단순한 지표달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체계의 구성에 다름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전략은 형성초기에 이와 연관되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또한 제도적인 구축의 초기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DGs 17번 목표와 국제개발협력분야에 국한할 때, 한국은 2021년부터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2019-2020년은 과도기로 규정하고 SDGs와의 연계를 장기적 전략의 관점에서 모색하고 국제개발협력의 개발재원과 개발협력파트너십의 거버넌스 기제와 수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윤희(2018). SDGs 17번[지구촌협력](K-SDGs 작업반 보고서).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 <http://ncsd.go.kr/app/board/sdgsWsList.do>).(검색일: 2019.06.02).
- 김석호·권현지·김태균·박영실·이영미·정혜진·홍석철(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1-2」, 통계개발원.
- 김잔디(2017).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 혼합금융 지원수단 및 구조화기법”, 「EDCF 이슈페이퍼」 6(1).
- 김태균(2018). 「대향적 공존:글로벌 책무성의 아시아적 재생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태균·이승철·최나은(2015).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십으로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비교연구”, 「국제관계연구」 20(1), pp.135-175.
- 김태균·이일청(2014). “국제개발 재원조달의 다중전환과 공적개발원조의 중심성:한국적 재해석을 위한 단상”, 「지역발전연구」 23(2), pp.1-34.
- 김태균·이주하·우창빈(2016).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행정한류 추진전략 연구」, 행정안전부.
- 문경연·이진영·여원영(2014). “국제개발협력과 개발재원: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행위자 정책 분석”. 「동서연구」 26권 2호, pp.87-117.
- 박영실·이영미(2017). “SDGs통계 거버넌스 연구”, 「2017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VI권」 pp.116-166, 통계청.
- 박영실·이영미·김석호·차은지(201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할”, 「조사연구」 18(3), pp.77-96.
- 박예린·박인혜(2015).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국제협력단.
- 박정호·정소윤·김은주(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손혁상·한재광(2014). “개발원조에서의 정부-NGO 파트너십 제도변화 연구: 네덜란드 ‘공동재원조성(Co-financing)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중심

- 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8(1), pp.221-239.
- 손혁상·박종남(2017). “개도국 시민사회의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동향연구: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측정지표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5(1). pp.243-289.
- 오수현(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재원메커니즘”, 「국제개발협력」 3호. pp.3-19.
- 오수현(2016a).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 : 개념의 발전과 동향”, 「국제개발협력」 3, pp.31-51.
- 오수현·이인호(2018). 「OECD DAC의 민간재원동원 측정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 임소진(2015). “ODA 현대화와 민간재원II:민간금융수단(PSI)의 ODA 통계보고”, 「EDCF 이슈페이퍼」 4(5).
- 정지원·정지선·이주영·유애라(2018).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경제총괄부 정책연구팀(2015). “SDGs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혼합금융(Blended Finance)”, 「EDCF 이슈페이퍼」 4(7).
-
- _____ (2016). “ODA현대화:2016년 OECD DAC 각료급회의(HLM) 결과와 시사점”, 「EDCF 이슈페이퍼」 5(1).
-
- _____ (2017).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국익(National Interest)의 부상”, 「EDCF 이슈페이퍼」 6(4).
- 현민(2017). “UN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수단에 관한 연구:개발재원과 개발주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6(3), pp.109-140.

[정책문서 및 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제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11&efYd=20190625#0000>). (검색일: 2019.06.18).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5.11.10).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관계부처합동)」(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22-1호).
-
- _____ (2016). 「개발금융의 ODA 활용 방안(기획재정부)」(제2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28-4호).

_____(2019a.01.15).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안)(관계부처합동)」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32-3호).

_____(2019b.07). 「2020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요구액 기준)(관계부처합동)」 (제3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33-1호).

_____(2019c.01.15). 「19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안)(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32-2호).

_____(2019d.01.15).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기준)(관계부처합동)」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32-1호).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

관계부처 합동(2018.07.27).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경과 및 세부목표지표 체계(안).

외교부 개발협력국(2018). 「2019년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지침」.

환경부·관계부처합동(2018.12.2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Benn Julia, Sangare Cecile, and Hos Tomas(2017). "Amounts mobilised from the Private Sector by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Interventions. Guarantees, syndicated loans, shares i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direct investment in companies and credit line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 36*. OECD.

Guillaume Delalande, Raundi Halvorson-Quevedo and Cécile Sangaré(2018). "The Philippines' Perspective on TOSSD",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 42*. OECD.

Guillaume Delalande and Valérie Gaveau(2018). "Senegal's Perspective on

- TOSSD",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 43*. OECD.
- Guillaume Delalande, Friederike Rühmann, Aussama Bejraoui and Julia Benn(2018). "Nigeria's Perspective on TOSSD",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 50*. OECD.
- IAEG-SDGs(2019).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검색일: 2019.07.01).
- Marisa Berbegal-Ibanez et al(2019). "Costa Rica's Perspective on TOSSD",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 56*. OECD.
- OECD(2016a). *Private Sector Peer Learning, Peer Inventor 1: Private Sector Engagement Terminology and Typology*. OECD.
- _____(2016b). TOSSD Compendium(Draft): For Public Consultation.
- _____(2018a).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8*, OECD.
- _____(2018b). *Global Outlook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9: Time to Face the Challenge*, Paris:OECD.
- _____(2018c). Aid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tatistics based on DAC Members' reporting to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base(CRS), 2015-2016, OECD.
- _____(2018d).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Joining Forces to Leave No One Behind*, Paris:OECD. pp. 350-353
- OECD DAC(2019). "TOSSD: A New Statistical measure for the SDG era".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TOSSD-A-New-Statistical-Measure-for-the%20SDG-Era.pdf>).(검색일: 2019.06.15).
- OECD DAC WP-STAT(2018). "Converged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fo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and the

- Annual DAC Questionnaire: Annexes-modules A, B, and C.”
DCD/DAC/STAT(2018)9/FINAL.
- UN(2015).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A/RES/69/313).
- UN(2017a).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E/CN.3/2017/2).
- UN(2017b). *Report of the High Level Group for Partnership, Coordination and Capacity-Building for Statistics fo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N.3/2017/3).
- UN(2019).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E/CN.3/2019/2).
- UNCTAD(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Investing in the SDGs, An Action Pla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Geneva,

Linking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cusing o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of SDGs target 17

Hyun, Min *

< Abstract >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distinguished from the previous development agenda by stating 'Strengthening the means of implemen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revitalizing the global partnership' (goal 17). This paper examines how UN-SDGs 17 is reflected in K-SDGs and how it relates to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DGs 17 can be described as two pillars of development financing and the development partnerships, except for developing countries' structural capacity, and so is K-SDGs.

K-SDGs, which intend to cove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have set the indicators as the ratio of ODA to GNI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development resources. This is a realistic goal for Korea, whe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centered on ODA, and their proportion is low. Nevertheless, considering changes in the topography of development financing, such as the reduction of development resources, the modernization of ODA, and the introduction of TOSSD, it is necessary to discuss and develop various means of development financing, including mobilization of private resources. In the case of development partnerships, In the case of (global) partnerships,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for domes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 to become government policy

*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artn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SO capacity as a development subject, such as partnership formation with local CSOs and loc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measures to harmonize with the ODA's accountability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iversification of development resources.

Consider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entered on ODA, how to form partnerships with recipient countries is important in the strategic pla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this end, Korea should not only strengthen policy dialogue with recipient governments from the stage of ODA strategy planning but also strengthen partnerships with multi-layered development subjects in recipient countries. At the same time, long-term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and strategy as a donor country should be established.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Goal 17,
Development financing, Development partnership**

투고일: 2019.07.15. | 심사완료일: 2019.08.31. | 게재 확정일: 2019.08.31.

